



2015 제3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제29권 제3호)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Problems on the Collecting and Oversight in DNA Database

서 주 연*

차 례

I. 서 론	IV.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관련법 제와의 비교
II.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V. 결 론
III. 미국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	

• 국 문 요 약 •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관련기술의 부재로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죄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혈액형의 동일성을 증명하였던 것에 불과하던 혈흔에서도 이제는 DNA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NA정보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그 중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가 마련된 바 있다. 미국은 DNA관련 규정을 연방과 각 주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DNA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해서도 각 주별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경성대학교 법학과 비전임강사

I. 서론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기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분석에 있어서도 과거 혈흔을 통한 혈액형분류에서 더 나아가 체액에서 추출한 DNA유전자형을 통한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기에 이르렀다. DNA정보가 수사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은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DNA정보는 더 나아가 각종 강력범죄 해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범죄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10년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DNA관련 법제를 운용 중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 DNA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개념 및 분석방식

1)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개념¹⁾

DNA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NA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DNA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이 DNA감식의 대상이 된다.

2) STR(Short Random Repeat) 방식

DNA데이터베이스는 STR방식을 기반으로 한 HumvWA, D3S1358, D5S818 등 총 13가지의 유전좌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STR 방식은 DNA복제 기법에 의하여 DNA 샘플을 대량으로 증폭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험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분석기간이 단축되며 미량이거나 손상된 샘플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²⁾ 이때 수

1)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집된 샘플로부터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자료는 DNA 중 유전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개재염기배열부분(intron) 즉, Junk DNA로 이를 통해서는 개인의 유전 및 질병여부를 알 수 없어 개인식별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유전정보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³⁾

2.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관

DNA정보의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1990년대 초부터 수사 실무상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 유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및 검찰과 경찰의 관리주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초부터 연쇄살인사건 및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2006년 유영철사건 및 대전발바리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예방대책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었으나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08년 3월 혜진·예슬양 살인사건, 2009년 1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의 발생으로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수정된 의결안이 찬성222표, 반대66표로 통과되고 2010년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⁴⁾

2) 권창국,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등 각국의 DNA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 관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6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71쪽.

3) 위의 논문, 176쪽.

동법은 범인의 조속한 검거와 무고한 용의자를 조기에 수사선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

동법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재범 가능성 및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자의 DNA신원확인 정보를 수집·관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침해하는 강한 불법성을 가지지 않는 절도 및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죄에 대하여 DNA신원확인정보가 수집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⁵⁾

4) 하태영, “DNA 관리법과 DNA 감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90-291쪽.

5) 조성용,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8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33-234쪽, 동지 임석원,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3집, 한국법학회, 2014, 44-45쪽.

2) 디엔에이(DNA)감식시료 채취

(1) 디엔에이(DNA)감식시료 채취 대상

DNA감식시료 채취 대상과 관련해서 동법 제5조는 유전자활용의 대상으로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로부터 DNA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라 함은 실무에서의 관행적인 예방구속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예방적 구속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포함된다.⁶⁾

그리고 동법 제7조에서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범죄피해자신체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견된 것, 범죄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되거나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부·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에 한하여 범행현장에서의 유전자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2) 디엔에이(DNA)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동법 제2조 제2호는 DNA감식시료를 얻기 위한 사람의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을 감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구강점막에서의 채취를 기본으로 하며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 그 밖에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

6)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173쪽.

분비물, 체액의 채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구강점막의 채취가 빈번하게 이용된다.

(3) 디엔에이(DNA)감식시료의 채취절차

① 영장에 의한 방법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 등의 DNA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증거수집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판사(군판사 포함)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채취영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첨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장소,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경과시 집행착수가 불가능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서명날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채취영장의 집행에 따른 감식시료 채취시에도 일반 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동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채취이유와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DNA시료를 감정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영장은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영장으로 단일화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감식의 경우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장으로 허가할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감식 감정처분처가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⁷⁾ 그

7) 임석원, 앞의 논문, 51쪽.

러나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장에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동법 제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전자감식채취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② 동의에 의한 방법

수형자 및 구속된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동법 제8조 3항에 의하면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영장에 의한 경우보다 동의에 의한 DNA채취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⁸⁾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DNA감식시료 채취동의서가 아닌 생명윤리법⁹⁾이나 실종아동법¹⁰⁾에서 사용하는 동의서를 사용하거나 기타 임의의 채취동의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¹¹⁾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의능력이 결여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¹²⁾ 심신상실 및 심신미

8) 2011년부터 2013년간 DNA채취 현황에 따르면 채취인원 6만 590명 중 영장에 의한 채취는 0.4%인 237명이며, 동의에 의한 채취가 99.6%인 6만353명에 해당한다.

9)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제12844호 타법개정 2014. 11.19. 시행).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 1. 1.시행)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타법개정 2015. 1. 5.시행).

1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법제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시행).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2014. 11. 19.시행)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20호 일부개정 2013. 11. 20.시행).

11) 한면수, “DNA 대량검색의 유용성 및 문제점 고찰”, 경찰학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 제42호), 경찰학연구소, 2015, 44쪽.

약으로 인해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 자와 같이 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취대상자의 경우 및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의사결정능력의 약화나 결여 상태가 있는 채취대상자의 경우 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디엔에이(DNA)감식시료의 폐기

동법 제12조는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형인 및 피의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DNA감식시료를 DNA감식이 끝난 후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DNA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 채취된 DNA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DNA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피의자나 수형자와는 달리 검색대상자인 용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즉, 검색대상자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동법 제12조¹³⁾에 명기되어 있는 제6조의 구속피의자와 제5조의 수형자의

12) 임석원, 앞의 논문, 52-53쪽.

13)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디엔에이 감식시료의 폐기)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디엔에이 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재분석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한 경우 폐기 일시와

규정에 따르지만 의뢰 대상자에 대한 검색 후 폐기규정이 없어 시험 후 관련 DNA결과 처리문제에 공백이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해당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감정처리 규정에 따라 감정기일인 15일 동안 보관하고 반환요구가 없으면 시료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 때 DNA결과에 대해서는 시험 근거로 남기기 위해 보관하고 있어 범죄사실이 없는 단순 용의자의 DNA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았음에도 문서로 보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¹⁵⁾

3)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담당자는 동법 제11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DNA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DNA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용도·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즉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그 결과의 회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또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문제는 지목된 범죄자가 없는 범죄사건에서 범인 검거를 위하여 DNA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처리규정, 2014.

15) 한면수, 앞의 논문, 33쪽.

대량검색을 하는 그물망 수사의 경우를 동법 제11조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①항2호의 확대해석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¹⁶⁾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2013년 6월 제주 서귀포에서 발생한 10대 미성년자 성폭행범 검거를 위해 사건 현장 주변거주자 1300명의 대량검색을 통하여 그물망식 DNA 대량검색을 실시한 경우가 있다.¹⁷⁾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단지 수사용의자에 불과한 자들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과의 비교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¹⁸⁾

4)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DNA신원확인정보 담당자는 수형인 등에 대해서 채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구속피의자 등이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유전자채취의 대상이 된 주요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대상범죄의 외의 죄명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의 무

16) 후술할 미국의 경우 2004년 4월 버지니아의 카롯빌(Charlottesville)에서 발생한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일어나 적어도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연쇄강간범을 검거하기 위해 DNA대량검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대량 검색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개인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유전학적 침해문제가 거론되고 있다(한면수, 앞의 논문, 36쪽 재인용).

17) 피해자의 의류에서 수거된 모발에서 얻어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DNA와 비교하기 위하여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DNA를 수집하여 동일 DNA 정보를 지닌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때 무작위로 의뢰된 모든 대상자는 DNA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여타 미해결사건들과 비교 검색 되어 과거 미제 강간사건 등의 DNA와 일치하는 10여건의 별건 미해결 범죄를 해결하였다(<http://news1.kr/articles/1233514>, 2015. 7. 15 검색).

18) 한면수, 앞의 논문, 36-37쪽.

죄, 면소,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및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두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DNA신원확인정보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삭제한 경우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에서 혐의의 불기소처분인 혐의 없음이나 죄가안됨 혹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DNA신원확인 정보인 DNA정보를 삭제하지만, 검사가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삭제할 필요가 없이 예외적으로 DNA정보가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

5)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동법 제3조 국가의 책무규정에서는 DNA신원확인정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정보는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는 앞서 살펴본 일명 Junk DNA라 불리는 개재염기배열부분(intron)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그 이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6)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및 벌칙

동법 제15조에서는 DNA감식업무 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동법 제17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DNA신원확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DNA감식시료를 인멸·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DNA감식시료와 추출한 DNA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의 내밀하고도 중요한 정보인 DNA정보의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Ⅲ. 미국의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

1. 미국의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관

미국의 DNA관련 법제는 1990년대 성폭력범죄 및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FBI가 CODIS¹⁹⁾시스템을 마련하여 14개 주와 지방 법과학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운용한데서 시작하였다.²⁰⁾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DNA데이터베이스는 미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와 주정부

19) CODIS는 NDIS를 지원하는 DNA정보 분석 및 상호연동시스템을 말한다.

20)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ODIS Combined DNA INDEX System. (http://www.fbi.gov/about-us/lab/codis_brochure, 2015. 7. 12. 검색).

에서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나누어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미국의 DNA식별법(The DNA Identification Act 1994)에 따라 국가 DNA정보시스템(The National DNA Index System) NDIS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각 주의 DNA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즉 각 지역 경찰기관에 소속된 범죄분석실에서 실시한 DNA Typing 자료를 LDIS(Local DNA Index System)에 입력하면, 주정부에서 통합하여 SDIS(State DNA Index System)가 관리하고, 이를 미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NDIS(National DNA Index System)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²¹⁾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연방수사국(FBI)의 CODIS는 각 주의 데이터베이스와도 상호접속 및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피의자 1,911,810명, 수형자 11,634,999명 및 범죄현장 DNA 612,477건의 DNA데이터베이스(CODIS-NDIS)를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다.²²⁾

그리고 이 때 각 주의 DNA정보 시스템에 저장되는 DNA정보의 범위와 기준은 각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며, 성범죄자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같이 최초의 입법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하는 주에서부터 유죄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된 자의 DNA 채취 및 분석을 허용하는 주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DNA정보 시스템에 저장되는 DNA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1) 이에 따라 2008년 기준으로 611만명 정도의 입력자와 24만 여건의 미제사건 DNA프로파일이 수록되어 있고, 실제 7만5천 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권창국, 앞의 논문, 172쪽).

22) 한면수, 앞의 논문, 33쪽.

2.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미연방법제

미국 정부는 1994년 DNA식별법 이후 DNA분석잔량제거법(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을 통해 살인, 강도, 성폭력, 유괴, 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거나 가석방 되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 및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연방정부는 2004년 모든 정의에 관한 법(Justice for All Act)에 따라 모든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DNA 정보를 보관할 수 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2005년 대여성 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an and Department of Justice Reauthorization Act of 2005)에 부가된 DNA지문법(DNA Fingerprint Act of 2005)에서는 관련 규칙²³⁾제정을 통하여 유죄판결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체포된 사람 및 미국 시민이 아닌 억류된 사람으로부터도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⁴⁾ 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체포하거나 억류한 개인으로부터 기소 전 지문을 채취할 경우 DNA샘플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더 나아가 미국연방법은 법무부장관, 교정국장, 보호관찰사무소가 DNA샘플의 채취협조를 거부하는 자를 구금, 제압하고 DNA샘플을 채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²⁶⁾

23) Rules and Regulations, Department of Justice, 28 CFR Part 28, 73 FR 74932, 2008 WL5155925.

24) 42 U.S.C.A § 14135(a).

25) 이성기, “미국·영국·프랑스에서의 디엔에이(DNA) 채취법에 대한 위헌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양법학 제22권 제4집(통권 제36집), 한양법학회, 2011, 357-358쪽 재인용.

하고 있어 법원의 영장을 요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동 규정에 따른 DNA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자는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로 체포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²⁷⁾

1)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분류²⁸⁾

미연방법에 따른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색인, 미제사건색인, 표본집단색인으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범죄자색인(Felon Index)은 형이 확정된 일정 범위의 범죄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는 범죄자의 인적사항과 분리하여 보관된다.²⁹⁾ 미제사건색인(Forensic Index)은 강력사건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에서 DNA분석을 통하여 획득된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범죄자색인과 비교함으로써 범죄용의자를 검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 때 범죄자색인에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존재한다면 그 범죄자가 용의자로 주목되어 수사가 시작되며,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발견하지 못하면 미제사건색인에 분류되어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에서 획득한 유전자형과 비교하여 연쇄범죄의 여부 및 각 종 범죄에 대한 연구에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표본집단색인(Population Index)은 범죄와는 무관한 임의집단의 유전자형 분포자료로 일치확률이나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된다.

26) 42 U.S.C.A § 14135a(a)(4)(A).

27) 42 U.S.C.A § 14135a(a)(5).

28) 김혁돈,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법학논고 제3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43쪽.

29) 미국의 경우 DNA데이터베이스를 연방의 FBI가 관리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각 주의 경찰이 보관하도록 하여 DNA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고 있다.

2)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대상범죄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기관은 미국연방법에 따라 모든 중범죄³⁰⁾ 및 특정한 경범죄³¹⁾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폭력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영장 없이 강제로 DNA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해당 샘플은 미연방수사국(FBI)에서 분석한 후 CODIS에 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CODIS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체포된 자, 범죄현장의 유류된 DNA, 실종자, 실종자 가족의 동의하에 제공된 DNA,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 또는 변사자들의 DNA정보가 저장되게 된다.³²⁾

3) 디엔에이(DNA)샘플 채취

(1) 디엔에이(DNA)샘플 채취 시기

미연방정부의 경우 이상과 같이 모든 중범죄와 경범죄까지 DNA 채취가 확대되어 있으며 이들의 DNA샘플은 주로 Booking단계³³⁾에서 채취하고 있으나, 유죄확정 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 등의 인정시점에서 수집되는 경우도 있다.³⁴⁾

30) 미국은 사형·무기징역을 A급 중죄로, 법정형이 1년 초과 5년 미만은 E급으로 분류하면서 기본적으로 A~E급의 5등급으로 중죄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중죄에는 법정형이 1년을 초과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18 U.S.C.A § 3559(a).

31) 18 U.S.C.A chapter 109 A이하에서의 규정에 따른 수감시설에 수용된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18 U.S.C.A § 2241이하.

32)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ODIS Combined DNA INDEX System. (http://www.fbi.gov/about-us/lab/codis_brochure, 2015. 7. 12 검색).

33) 피의자 체포시 경찰서로 인치하여 체포원부(Arrest Book)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체포일시, 체포사유 등을 기재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무기 또는 다른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과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체포행정 절차를 Booking이라 한다.

(2) 디엔에이(DNA)샘플 폐기

미연방의 경우 미연방수사국(FBI)이 DNA Typing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분석의 요구에 대한 대응필요, 분석의 정확성 보장, 검증할 수 있는 추시가능성의 확보, 샘플의 남용사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샘플의 사후 폐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³⁵⁾

4)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삭제

DNA데이터베이스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체포된 사람이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장된 DNA정보를 삭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에 따라 삭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해당자가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에 관한 법원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인 미연방수사국(FBI)에 제출한 후 삭제요청을 하여야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³⁶⁾ 미연방수사국(FBI)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가 조각되는 한 삭제되지 않은 DNA정보가 다른 범죄 DNA와 일치하여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된다.³⁷⁾

5)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이용범위

CODIS의 자료는 범죄수사 등 범집행을 목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경우, 타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자료공개가 허용된 경우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결정된 경우,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

34) 이성기, 앞의 논문, 359쪽.

35) 권창국, 앞의 논문, 176쪽.

36) 42 U.S.C.A § 14132(d).

37) Genetic Justice, Sheldon Krinsky and Tania Simoncelli, 35, Columbia(2010).

구통계조사나 DNA Typing 분석기술이나 절차의 개량·개선 및 분석결과
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정보는 제
외하고 익명화된 DNA Typing자료만 공개 가능)에 공개가 가능하다.³⁸⁾

3. 각 주의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

DNA정보시스템은 1989년 버지니아주가 최초로 설립한 이후 모든 주
에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범죄 및 특정 중범
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중범죄 이상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보관하고 있으며 주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
를 소급하여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³⁹⁾ 체포된 자에까지 DNA채취를 허
용하고 있는 주는 2006년 기준 모두 24개 주로, 이들 주는 살인과 성범
죄의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서는 DNA채취를 허용하고,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아칸사스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22개 주가 DNA채취를 허용
한다.

1)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대상범죄

미연방법률과 달리 미국 각 주에서는 DNA데이터베이스 대상범죄에
관하여 차이를 두고 있으나 유형화하여 분류하자면 성범죄 및 특정 폭
력적 중범죄(폭력적 중범죄로 유죄 확정이 된 자)만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경우, 성범죄 및 폭력적 중범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우, 모든

38) 권창국, 앞의 논문, 176쪽.

39) <http://dnaresource.com/>(2015. 7. 20 검색)

유형의 범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우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각 주들의 경우 초기에는 성범죄 및 특정 범죄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나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위증죄도 대상범죄에 포함하고 있다.⁴⁰⁾

2) 디엔에이(DNA)샘플 채취

(1) 디엔에이(DNA)샘플 채취시기⁴¹⁾

DNA샘플은 유죄확정 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 등의 인정시점에서 수집되는 경우와 체포시점에서 샘플이 수집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 대부분의 주에서 유죄확정 후 샘플을 수집하고 있었으나 현재 DNA 채취시기는 보통 체포 등재를 하는 Booking단계이며 예외적으로 기소인부단계에서 채취하기도 한다. 이 때 콜로라도, 메릴랜드, 유타주와 같은 경우 Booking단계에서 DNA를 채취한 후 기소 전에는 관련정보를 업로드 하지 못하게 하거나 텍사스주와 같이 기소인부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하면서도 일정한 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Booking단계에서 채취를 허용하기도 한다.⁴²⁾

(2) 디엔에이(DNA)샘플 폐기규정

DNA 감식에 활용된 샘플의 보관과 관련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주가 많으며, 이들 대부분의 주에서는 관련 샘플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

40) 권창국, 앞의 논문, 175쪽.

41) 권창국, 앞의 논문, 175-176쪽.

42) 이성기, 앞의 논문, 359-360쪽.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인정보남용의 예방을 위하여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샘플 폐기하고 있다.⁴³⁾

3)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삭제

해당 정보를 삭제와 관련해서는 24개 주 중 8개의 주 만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주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미네소타 주는 무죄판결시 해당 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고 있으나, 공소가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 삭제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어 중복으로 계산되었다.⁴⁴⁾

IV.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관련법제와의 비교

1.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 확대 문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신원확인 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재범 가능성 및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43) 권창국, 앞의 논문, 177쪽.

44) 이성기, 앞의 논문, 359쪽.

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침해하는 강한 불법성을 가지지 않는 절도 및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죄에 대하여 DNA 신원확인정보가 수집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DNA라는 신원정보가 미치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DNA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불법이 이에 준하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일 경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와 같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입의 정도가 덜한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미연방법률에서는 DNA감식시료 채취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상당수의 주 법률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그 대상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이들은 침해 대상의 인권을 비롯한 수정헌법상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와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 등 공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집되는 DNA정보는 일명 Junk DNA로 개인의 유전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유전적 정보가 분석되어지고 유출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우리 학계에서와 같이 그 대상을 축소하자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피의자 및 용의자의 디엔에이(DNA)감식시료 채취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단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불과한 피의자에 대하여 DNA를 수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미연방법률은 피의자 단계에서 DNA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에서도 Booking단계에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감식 후 시료에 대한 폐기와 관련해서도 추후 재검을 위하여 시료를 보관하는 주도 상당수이다.

현재 피의자 단계에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하지만 피의자 단계에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후 조기에 용의선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때 피의자의 DNA정보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분석되어지면 관련 시료의 조속한 폐기 및 컴퓨터를 비롯한 저장매체에 저장된 관련 정보가 삭제되어야만 해당 피의자의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법제는 구속 피의자의 DNA감식시료 폐기를 명문화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구속피의자나 수형자와는 달리 검색대상자인 용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감정처리 규정에 따라 감정기일인 15일 동안 보관하고 반환요구가 없으면 시료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

으나 이 때 DNA결과에 대해서는 시험 근거로 남기기 위해 보관하고 있어 범죄사실이 없는 단순 용의자의 DNA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았음에도 문서로 보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련성이 배제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감식시료 폐기가 명시되어 있는 현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보다 사건 관련성이 보다 덜한 단순 용의자에 대한 감식시료 폐기 및 관련 데이터 삭제 역시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DNA)감식시료의 채취

현재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라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영장에 의한 경우보다 이와 같은 동의에 의한 DNA채취방법이 90% 이상이다. 물론 동의에 의한 DNA감식시료 채취가 90%가 넘어섰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DNA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채취 목적 및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지 등 자발적 동의를 위한 요소가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영장에 의한 DNA감식시료 채취에 비해 수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의 과정에서 채취를 거부할 경우 유죄의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든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당연히 동의서에 날인하여야만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와 같이 자발성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DNA채취 동의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강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직하다. 영장에 의한 DNA감식시료 채취가 아닌 보다 간소한 동의에 의한 채취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

고자 한다면 설명의무의 명시를 통하여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디엔에이(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DNA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로는 지목된 범죄자가 없는 범죄사건에서 범인 검거를 위하여 DNA대량검색을 하는 그물망 수사의 경우이다. DNA대량검색은 우리의 경우 2013년 발생한 10대 미성년자 성폭행범 검거를 위하여 인근 남성 거주자 1300명에 대해 DNA대량검색을 한 경우와 같이 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단지 수사용의자에 불과한 자들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과의 비교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검색 회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가 가 문제된다. DNA대량검색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DNA대량검색이 실시될 때마다 개인 사생활 및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의 해결이 이어지면서 DNA대량검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한 인식도 있다.

DNA대량검색은 관련 대상자들의 협조라는 행위를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DNA대량검색이 디엔에이(DNA)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검색·회보 규정의 확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론에 의존하기 보다는

DNA대량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DNA정보는 인간의 중요한 생체정보로 그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범죄 해결에 DNA정보가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대상범죄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를 비롯하여 수사용의자의 DNA시료 폐기, 관련 데이터 삭제 등에 있어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DNA감식시료 채취대상 및 관련 시료 폐기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체포시뿐만 아니라 미국에 억류된 자로부터도 DNA채취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테러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료 폐기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 후 해당 시료를 폐기해야 하는 우리의 규정과는 달리 보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비롯하여 해당 DNA증거의 검증을 위한 것으로 우리와의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인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범죄해결을 통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 실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DNA신원정보는 한 인간을 특정할 수 있는 인간의 내밀하고도 중요

한 정보로 이에 대한 접근은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범인의 조속한 검거와 수사 용의자를 조기에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동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수사현실을 반영한 규정의 보완과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DNA정보(DNA information), DNA감식시료 채취(DNA collecting), DNA데이터베이스(DNA database), DNA대량검색(Wide search for DNA), CODIS(CODIS).

〈논문 접수 : 2015. 11. 15, 심사 개시 : 2015. 11. 17, 게재 확정 : 2015. 12. 23〉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처리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2. 논문

권창국,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미국 등 각국의 DNA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관계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6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혁돈,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법학논고 제3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성기, “미국·영국·프랑스에서의 디엔에이(DNA) 채취법에 대한 위헌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양법학 제22권 제4집(통권 제36집), 한양법학회, 2011.

임석원,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3집, 한국법학회, 2014.

조성용,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8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하태영, “DNA 관리법과 DNA 감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한면수, “DNA 대량검색의 유용성 및 문제점 고찰”, 경찰학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제42호), 경찰학연구소, 2015.

Ⅲ. 기타자료

http://www.fbi.gov/about-us/lab/codis__brochure(2015. 7. 12. 검색).

<http://dnaresource.com/>(2015. 7. 20. 검색).

< ABSTRACT >

Problems on the Collecting and Oversight in DNA Database.

Seo Ju-Yeon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has a positive influence in crime investigation. Especially technology of DNA analysis gave us possibility to compare prisoners blood or body fluids. DNA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is based on Deoxyribonucleic acid, it gave us to information for human identity. DNA analysis is a kind of forensic science, and it means a lot in police investigation today.

DNA information raised very important thing to solve the case, so the DNA Act in Korea was enacted in 2010. It regulated method of collecting samples, warrant issues, disposal of it and delete the data etc. Nonetheless it has some problems like a including none violent crimes, collecting samples in suspects and massive collecting issues.

United States is the one of the country has attention about DNA information and well regulated. Database about DNA information in US separated by CODIS and States databases, but its connected both way. It also has a feature like a expansion to none violent crime, regulations of saved DNA samples for the re-analysis, these things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us.

DNA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in human life, so we have to have more caution to collecting and make databases.